

전주지방법원 2016. 3. 23 선고 2014가단2977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변론 종결 2016. 3. 2.

판결 선고 2016. 3. 23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전북 완주군 J 대 93㎡ 중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내 부분 4㎡ 지상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창고를 철거하고,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.

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부분 지상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창고 전체를 철거하고,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는 2012. 11. 26. 전북 완주군 J 대 93m²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2012. 11. 23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그 지상에 주택 1동(이하 '원고 소유 주택'이라 한다)을 건축하였다.

나. 망 K는 1987년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L 도 지상에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창고 1동(이하 '이 사건 창고'라 한다)을 건축하였는데,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(이하 '이 사건 토지 부분'이라 한다)을 침범하고 있다.

다. 망인은 2005. 10. 9. 유족으로 처인 피고 C, 자녀인 나머지 피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에서 5호증, 을 1에서 1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또는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, 피고들은 2005. 10. 9. 이 사건 창고를 각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, 피고 C는 3/17지분, 나머지 피고들은 각 2/17지분씩 상속하였고,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 이 사건 창고를 공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.

그렇다면,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원고에게,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소유물 반환으로서 이 사건 창고 중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 부분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원고는,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창고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지상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도 철거할 것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,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지상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, 받아들일 수 없다.

나.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들은, 원고 소유 주택이 건축선을 침범하는 등으로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되었다거나, 국가 소유인 M 하천을 침범하였다는 등으로 주장하나, 이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또는 반환청구를 부인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,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.

또한 피고들은, 망인이 1987년 무렵 이 사건 창고를 건축하였는바 피고들은 망인의 점유를 승계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, 가사 피고들의 주장대로 2007년 무렵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, 원고가 그 이후인 2012. 11. 26.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앞서 본바와 같은 이상, 그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,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판사김예영

별지